### 2022년「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2차」 공고

충청남도와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협업마케팅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매출 증대 기여를 위해 「소상공인 협업마케팅 지원사업 2차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9월 (재)충청남도경제진홍원장

# I 사업개요

- □ 사업목적
- O 도내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기여
- O 협업체 구성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
- □ **모집기간**: 공고일로부터 ~ 9.28.(수) 18:00 까지
- □ 지원대상: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
- O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기준 참조
- □ 지원규모: 9협업체(27업체 이상)
- □ 신청방법: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,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
- □ 지원내용
- 협업체 공동 마케팅 소요비용(부가세 포함)의 90% 지원
  - 최대 2백만원,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협업체 부담

## Ⅱ 세부내용

### □ 지원대상

○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(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참여 가능)

####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(별첨 참조)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휴.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
-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2021~2022년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업체(단, 1/3 이하 신청시 가능)

### □ 지원분야

O 아래에서 하나의 지원분야만 선택(세부 지원내용은 복수 선택 가능)

지원분야	세부 지원 내용	비고
홍보물 제작	판촉물, 전단지, 리플렛, 카탈로그, 브로슈어, 홍보영상 등	
공동판촉	공동판매전(공동 사은행사, 세일전, 체험행사) 등	

※ 세부 지원내용 수행 시 협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(업체별 개별 지원 불가)

### □ 신청·접수

- O 신청방법: 통합지원시스템,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
- (통합지원시스템) www.cnsp.or.kr
- (이메일) sbizcenter@naver.com
- ※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'소상공인 협업마케팅(업체명)'기재
- (우편) 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,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(401호),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사업 담당자 앞 ※ 우편제출은 지원사업 담당자 앞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
- 제출서류: 대표업체 제출서류, 참여업체 제출서류 등 ※ 세부 내용 제출서류 (붙임 1. 신청서류 목록) 참조, 제출서류 반환 없음
- 제출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### □ 평가 및 선정

- O 요건검토: 신청자격 및 참여 제외대상 등 검토
- 현장점검: 대표업체 사업장 및 제출서류 등 확인
- 서면평가: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※ 모집범위 내 신청 시 선정평가위원회 생략(적격 판단 후 지원)

#### O 평가항목

- (우선) 특별재난지역(보령, 부여, 청양) 우선 지원
- ※ 보령, 부여, 청양: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(2022.9.1.,행정안전부)
- ※ 단, 협업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성 시 우선 지원
- 특별재난지역 미달 시 정량·정성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협업체 선정
- (공통) 정량·정성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협업체 선정
- 정성평가(60): 사업계획의 적정성, 구체성 및 현실성, 기대효과
- 정량평가(40): 협업체 평균 사업영위기간, 매출액, 상시근로자 수
- O 선정기준: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결과 고득점(2차 동점자 발생 시 업력-매출 순)
- O 가접항목: 2022년 역량강화교육 수료증 제출시 1점 부여(협업체 최대 3점)

### □ 수행업체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식

- O 수행업체 선정
  - 수행과제와 연관된 업체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수행업체 선정
  - 용역업체는 지역업체를 1순위로 고려하여 선정
  -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
- O 지원금 지급
  - 지원비 지급은 완료보고서 검토 완료 후 수행업체로 직접 지급
  -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협업체 부담금은 대표업체에서 납부 후 신청(납부증빙)
  - 사업 수행 후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필수
- 사업수행기간: 2022. 10. 14.(금) ~ 2022. 11. 30.(수)까지

#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

※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, 상세일정은 향후 공고 참조

# Ⅲ 유의사항

### □ 변경·포기 방법 안내

- O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안내[서식6]
  - 수행업체, 홍보물 제작내용, 대표자 변경 발생 시
  - 협업체 홍보물 제작비용 변경 시
    - ㆍ제작비용 상향시 지원금 변동 불가, 하향시 지원금 감액 변경 가능
- 선정된 지원분야 외 다른 지원분야로 변경 불가
- 지원 포기의 경우 시 포기신청서 제출 [서식 7]
- 지원포기 협업체는 다음연도 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불가

### □ 선정취소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제작한 경우
- O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된 과제 수행기간동안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- 과제 부실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위 내용으로 선정취소 협업체는 다음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불가

### □ 기타 유의사항

○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# IV 문의처

○ 문의처: 보부상콜센터 ☎ 041-424-4000

# 붙임 1 신청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	비고	
대표업체 제출서류	① 지원사업 신청서	서식 1	
	② 개인(기업)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각 1부	서식 2	
	③ 수행계획서		
	④ 참여확약서	서식 3	
	⑤ 사업자등록증(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)		
	⑥ 소상공인 확인(매출/고용인원) 서류 (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) ·(매출)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 ·(고용인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고용인원이 없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고용인원 1명 이상)	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	
	⑦ 지방세 납부증명서(최근 30일 이내)		
참여업체 제출서류	① 개인(기업)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각 1부	대교어체 치하대츠	
	② 사업자등록증(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)	대표업체 취합제출	
	⑥ 소상공인 확인(매출/고용인원) 서류 (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) ·(매출)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 ·(고용인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고용인원이 없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고용인원 1명 이상)	별도 제출 또는 대표업체 취합제출	
	④ 지방세 납부증명서		
가점서류	①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증	해당자에 한함	

### 【별첨 1】

###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	
2. 음료 제조업	C11	: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120 기원 이의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17. 수도업	E36		
19. 농업,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В		
20. 담배 제조업	C12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	
33. 정보통신업	J F(F2C TILOI)	30극권 이어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・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R C34		
39. 산업용 기계 및 정미 우리업 40. 숙박 및 음식점업	C34		
41. 교육 서비스업		평균매출액등	
41. 교육 서미스입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P	10억원 이하	
42. 보건합 및 사외복시 서미스합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Q		
43. 무디(修理) 및 기타 개인 적미스입 	) 5		
[8년] 교기 교기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			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## 【별첨 2】

# 지원제외 업종(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- ※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  -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 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※ 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